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이 경 숙[†] 박 진 아 최 명 희
한신대학교 세원영유아아동상담센터 신구대학교

본 연구는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상담 관련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 중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목격 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장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의 경우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정지’,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중 457명(88.9%)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설치 장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보육교사 중 490명(95.3%)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담당 역할은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추후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요구도

* 본 연구는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연구과제(연구책임자 한신대 이경숙 교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447-79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E-mail : debkslee@hs.ac.kr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천 송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3세 여아를 때려서 여아가 넘어지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고(SBS 뉴스, 2015. 1.13),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26개월 된 남아의 팔을 물어 상처를 냈으며(조선일보, 2015.1.30.), 남양주지역 보육교사는 3명 영유아의 팔과 다리를 바늘로 찔러 상처를 내는(동아일보, 2015.2.6.) 등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보육교사의 보육행동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동학대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수준과 질이 높다고 알려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만 1세 유아의 머리를 각티슈로 수차례 내리치고, 아이가 밑에 깐 이불을 잡아당겨 유아를 이불에 쌓인 채 바닥에 구르도록 만들기도 하는 등 학대를 한 장면이 CCTV에 찍혀 부모들이 학대신고를 한 사례도 발생하였다(MBC 시사매거진 2580, 2013. 9. 8).

언론보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매년 어린이집에서만 평균 104건의 아동학대가 보고되었으며, 2012년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총 135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중 무려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영유아를 신체적으로 때리고(37.8%), 언어적으로 욕을 하고(11.1%), 방임하는(18.5%)등 신체적,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도 어린이집에서 69건의 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총 1274건의 학대사례 중 5.4%에 해당되는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미국의 경우 영유아 보육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이 0.4%로 보고되었던 점(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2)에 비교한다면 국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보육교사 아동학대 문제가 해당 영유아와 그들 부모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주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비롯한 영유아의 전반적 정신건강과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관계, 그리고 이후 영유아가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대를 당한 영유아는 이후 낮은 자존감, 분노 및 공격성, 행동문제, 학습장애, 가출, 높은 자살률, 범죄행위 연루 비율,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성적문란행동, 신체질병 등 다양한 병리적 문제를 보이게 된다(김세진, 김교현, 2005;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이상규, 이민규, 2007; 이경숙, 박진아, 오은정, 2008; Nanni, Usher, Danese, 2012; Rich-Edwards, Spiegelman, Lividoti, et. al., 2010; Surtees, Wainwright, Pooley, et. al., 20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08). 영유아들이 하루 8-24

시간 동안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며 제2의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후 영유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예상된다. 실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해당 학급 5세 유아 16명을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11명의 유아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었다(SBS 뉴스, 2015.3.14.).

그러나 미국과 비교해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피해 영유아의 아동학대 후유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례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전문적 상담개입 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이다. 0-5세 영유아는 언어 및 인지발달 수준의 제한점으로 인해 일관성 있고 신뢰로운 언어적 자기보고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대와 관련하여 영유아를 심리평가하고 관찰측정 하는 과정은 시간적 소요가 많이 따를 뿐 아니라 영유아 발달 및 발달정신병리 관련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선별기준 및 선별도구(Korfmacher, 2000), 학대 발생 원인 및 대처요령과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으며(Saperia, Lakhanpaul, Kemp, et. al., 2009), 특히 보육기관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도 제작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08). 반면에 국내의 경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5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사례판정 및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내 학대를 비롯한 모든 아동학대 관련 사례를 다루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전문 인력이 국내 전체 인구 4800만 명에 383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베이비 뉴스, 2013. 11.25). 그러므로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달적으로 성인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를 심층적으로 심리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 내방하여 관찰측정하며, 다른 영유아 또래 집단을 모두 인터뷰 하여 아동학대 사례판정을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2014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고에 의하면 아동학대에 연루된 영유아, 보육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1-5세 영유아 대상 학대가 95.6%에 달한 반면, 보육교사에 대한 최종 조치는 지속관찰(45.5%)과 고소, 고발(46%)이 대부분이며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한 파악 및 보육교사와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심리검사나 심리치료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에 보고된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 보육교사가 국내에서 최초로 아동학대의 죄질이 높다는 판단 하에 구속수사를 받으며 재판 중인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검사나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 사례판정 이후 가해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 별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 인건비, 기타 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5.4.).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 사례보고가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및 처벌 강화 관련 법률 제정(새누리당안심보육정책토론회, 2015.2.11.), 전국 4만 3천여 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아동학대 전수조사(노컷뉴스, 2015.3.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제로 인증사업(내외뉴스, 2015.3.17.) 및 보육교사 업무 및 처우개선을 통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 해결 후속조치(소비자경제신문, 2015.3.18.)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및 도시별로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사, 학부모 및 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심포지엄과 간담회 및 부모 모니터링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3년 5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 장면이 CCTV 장면이 공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인천에서는 2015년 후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2,07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인천시청, 2015.3.11.).

그러나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관련 처벌과 법적 조치가 실시되고, 처벌이

점차적으로 보다 강화되며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에 반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경험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가 논문검색 기관인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를 통해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논문을 검색해 보았더니 총 6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모두 보육교사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행동 관련 연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실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적 사회 여론과 편견에 대한 반론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 1인당 6.3명의 영유아를 돌보면서(프레시안 뉴스, 2015.3.11.), 평균 150가지의 과중한 업무(프레시안 뉴스, 2015.3.19.)를 담당하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과 심각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부정적 훈육행동을 비롯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다(동아일보, 2013.6.12.)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보육교사가 실제로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목격 시 대처방안은 무엇을 사용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동학대 사례판정 시 가해 보육교사, 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보육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 및 보육교사 아동학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보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국내 최초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보육현장 상황을 직접 반영하여 보육교사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Bottom-up식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적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 및 목격 시 대처방안은 무엇이었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셋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시 가해 보육교사, 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넷째,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요구도는 무엇인가,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는 무엇인가, 여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 필요성 및 자격기준에 대한 요구도는 무엇인가, 일곱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연구대상자를 표집하기 위하여 전국 76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서울 00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전달받은 후, 본 연구에 대한 연구협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총 13개 센터(이천시, 고양시, 창원시, 포항시, 울산시, 성남시, 화성시,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노원구)를 모집한 후, 각 센터별로 50~1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를 배부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당 지역 내 어린이집(국공립, 범인,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질문지를 송부하였다. 질문지는 총 750부가 배포되었으며 598부(74.8%)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하지 않은 질문항목이 한 페이지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자료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질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514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보육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보육교사 직업 특성 상 모든 보육교사가 여성이었으며, 교사의 연령은 20~29세 209명(40.7%)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자 222명(43.2%)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졸 207명(40.3%), 전공은 유아교육학 163명(31.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 230명(44.7%), 가정 114명(22.2%), 민간 113명(22.0%), 직장 36명(7.0%), 범인 21명(4.1%)순으로 나타났다. 담당 학급은 만 1세 이하 169명(32.9%), 담당 원아 수는 1-5명이 166명(32.3%), 주당 근무시간은

표 1. 보육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N=514)

배경변인	구분	N	%
연령	20~29세	209	40.7
	30~39세	165	32.1
	40~49세	126	24.5
	50세 이상	14	2.7
최종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78	14.6
	대학 졸업(3년제 이하)	208	40.5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207	40.3
	대학원 석사	24	4.7
최종 학력 전공	보육학	125	24.3
	유아교육학	163	31.7
	사회복지학	52	10.1
	아동(복지)학	84	16.3
	가정(관리)학	6	1.2
	교육학	12	2.3
	영양학	2	0.4
	특수교육학	6	1.2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30	44.7
	법인	21	4.1
	민간	113	22.0
	가정	114	22.2
	직장	36	7.0
직위	교사	410	79.8
	주임	72	14.0
	원장	32	6.2
담당 학급 및 원아수	만1세 이하	169	32.9
	2세	106	20.6
	3세	48	9.3
	4세	42	8.2
	5세	56	10.9
	6세	24	4.7
	7세	7	1.4
	기타(혼합반)	62	12.1
원아수	1~5명	166	32.3
	6~10명	144	28.0
	11명~15명	88	17.1
	15명~20명	70	13.6
	21명~25명	29	5.6
	25명 이상	17	3.3
	40~44시간 미만	239	46.5
근무시간 (주당)	45~49시간 미만	159	30.9
	50~55시간 미만	87	16.9
	56시간 이상	29	5.6
	100만원 미만	22	4.3
월 평균 급여 (수당포함)	100~120만원 미만	75	14.6
	120~150만원 미만	97	18.9
	150~170만원 미만	98	19.1
	170~200만원 미만	129	25.1
	200만원 이상	93	18.1
	1년 이하	236	45.9
경력	1년 1개월 이상~5년 이하	181	35.2
	5년 1개월 이상~10년 이하	14	2.7
	10년 1개월 이상~15년 이하	78	15.2
	15년 1개월 이상~20년 이하	5	1.0

평균 40-44시간 미만 근무자가 239명(46.5%), 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 구분은 170-200 만원 미만 129명(25.1%), 근무 경력은 1년 이하 236명(4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담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진(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증 보유)은 영유아 정신 건강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 인식 및 아동학대 관련 상담 서비스 요구도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크게 인구학적 배경,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행동 유형 및 심각도에 대한 인식(예; 손 또는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린 경우는 어느 정도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는가? 등),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안 및 원인(예; 아동학대 목격 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등),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예;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가해 보육교사,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 필요성 및 자격기준에 대한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응답은 문항 유형에 따라 중복응답 및 1, 2, 3순위를 정하는 다중응답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인구학적 배경특성,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목격 유무 및 목격 시 보육교사 대처방안,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 경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참석 경험,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 및 전문상담요원 필요에 대한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동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가 보육행동 중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행동 총 14문항을 제시하고, 그中最심각한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보육교사가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489명, 95.7%), 다음

표 2.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동에 대한 인식 (중복응답) (N=514)

	내용	N	%
1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464	90.6
2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403	78.9
3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342	66.9
4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408	79.8
5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315	61.6
6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358	70.1
7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311	60.9
8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410	80.2
9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489	95.7
10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474	92.8
11	도구(장난감, 식판, 막대기 등)를 이용해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484	94.7
12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484	94.7
13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488	95.5
14	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480	93.9

으로는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488명, 95.5%), ‘도구(장난감, 식판, 막대기 등)를 이용해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484명, 94.7%),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484명, 94.7%), ‘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480명, 93.9%),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474명, 92.8%),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464명, 9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358명, 70.1%),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행동’(342명, 66.9%),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은 행동’(315명, 61.6%),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311명, 60.9%)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목격 경험 및 대처방안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목격 여부 및 학대자 유형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학대자는 누구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보육교사 총 514명 중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표 3.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목격 여부 및 학대자 유형 (중복응답) (N=514)

동료 보육교사	본적이 있다 (n=92) N(%)		본적이 없다
	원장	기타 교사(급식, 차량운행)	
48(9.3)	14(2.7)	2(0.4)	422(82.1)

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료 교사에 의한 학대(48명, 9.3%) 목격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학대(14명, 2.7%), 기타 교사(급식, 차량운행 등)(2명, 0.4%)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목격 후 대처방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목격 후 보육교사가 사용한 대처방안은 무엇이었는지를 가해 보육교사 유형별로 각각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동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목격 시에는 ‘학대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20명, 41.7%),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9명, 39.6%), ‘동

료교사나 원장에게 이야기하거나 알렸다.’(16명, 3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목격 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명, 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학대 목격 후 대처방안 중 ‘온라인, 언론기관 등에 공개적으로 알렸다.’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등의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목격 후 무조치 이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가해 교사 유형별로 각각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 4.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목격 후 대처방안 (중복응답) (N=514)

내용	N(%)		
	동료 교사에 의한	원장에 의한	기타 교사 (급식, 차량운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39.6)	7(50.0)	0(0.0)
아동상담기관이나 아동학대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	0(0.0)	0(0.0)	0(0.0)
학대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20(41.7)	5(35.7)	1(33.3)
학대받은 영유아의 부모나 보호자를 만나 면담을 하였다.	3(6.3)	1(7.1)	0(0.0)
동료교사나 원장에게 이야기하거나 알렸다.	16(33.3)	3(21.4)	1(33.3)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 하였다.	5(10.4)	0(0.0)	0(0.0)
온라인, 언론기관 등에 공개적으로 알렸다.	0(0.0)	0(0.0)	0(0.0)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0(0.0)	0(0.0)	0(0.0)
기타	1(2.1)	0(0.0)	1(33.3)

동료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무조치 이유. 동료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목격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1순위, 2순위, 3순위)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22.1%), 2순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22.1%), 3순위 '근무하는 직장과 동료교사, 원장 등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무조치 이유.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목격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된 이유(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23.8%), 2순위 '근무하는 직

장, 동료교사, 원장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21.4%), 3순위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9.52%)와 '아동학대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9.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라고 판단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가장 높게 나타난 추후 대처방안은 '아동상담기관이나 아동학대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도움을 청하겠다.'(242명, 47.1%)이었으며, 다음으로 '동료교사나 원장에게 알리겠다.'(90명, 17.5%), '학대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겠다.'(86명, 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게 나타난 추후 대처방안은 '온라인이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적으로 알리겠다.'(1명, 0.2%)

표 5. 동료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 (다중응답) (N=514)

내용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6(31.6)	3(15.8)	1(5.3)	25	2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7(36.8)	2(10.5)	0(0.0)	25	1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5.3)	6(31.6)	5(26.3)	20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을 알지 못해서	0(0.0)	1(5.3)	2(10.5)	4	
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0(0.0)	2(10.5)	2(10.5)	6	
신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0(0.0)	0(0.0)	1(5.3)	1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0(0.0)	0(0.0)	1(5.3)	1	
신고로 인한 신분노출, 보복, 비난, 불이익 등이 두려워서	0(0.0)	1(5.3)	1(5.3)	3	
근무하는 직장, 동료교사, 원장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3(15.8)	2(10.5)	4(21.1)	14	3
아동학대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	2(10.5)	2(10.5)	2(10.5)	14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6.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 (다중응답) (N=514)

내용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1(14.3)	0(0.0)	0(0.0)	3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1(14.3)	0(0.0)	1(14.3)	4	3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14.3)	3(42.9)	1(14.3)	10	1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을 알지 못해서	0(0.0)	0(0.0)	0(0.0)	0	
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0(0.0)	1(14.3)	2(28.6)	4	
신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0(0.0)	1(14.3)	0(0.0)	2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0(0.0)	0(0.0)	2(28.6)	2	
신고로 인한 신분노출, 보복, 비난, 불이익 등이 두려워서	0(0.0)	2(28.6)	0(0.0)	4	
근무하는 직장, 동료교사, 원장에게 피해가 같 것 같아서	3(42.9)	0(0.0)	0(0.0)	9	2
아동학대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	1(14.3)	0(0.0)	1(14.3)	4	3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7. 추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N= 514)

내용	N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10	1.9
아동상담기관이나 아동학대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도움을 청하겠다.	242	47.1
학대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겠다.	86	16.7
학대받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를 만나 면담을 하겠다.	53	10.3
온라인이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적으로 알리겠다.	1	0.2
가해 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하겠다.	17	3.3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법률조언을 구하겠다.	11	2.1
동료교사나 원장에게 알리겠다.	90	17.5

이었다.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보육교사는 아

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365명, 71.0%)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과다한 업무’(329명, 64.0%), ‘보육교사의 현재 정신건강 문제’(270명, 52.5%), ‘열악한 근무 환경’(255명, 49.6%), ‘보육교사의 성격적 문제’(223명, 43.4%),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182명, 35.4%), ‘보육교사의 교육수준’(110명, 21.4%), ‘학대에 대한 교육 부족’(117명,

표 8.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중복응답) ($N= 514$)

발생 원인	N	%
과다한 업무	329	64.0
직무스트레스	365	71.0
열악한 근무환경	255	49.6
보육교사의 교육수준	110	21.4
보육교사의 성격적 문제	223	43.4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문제	270	52.5
교사들 간의 갈등	61	11.9
학대에 대한 교육 부족	117	22.8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182	35.4

22.8%), ‘교사들 간의 갈등’(61명, 1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 한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도

가해 보육교사 대상 후속조치 요구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었

을 경우, 보육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 육교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 보육 교사에 필요한 후속조치로 1순위 ‘교사자격 정지’(31.6%), 2순위 ‘교사자격 취소’(24.0%), 3 순위 ‘전문 상담 후 복귀’(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후속조치 요구 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었 을 경우, 보육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피 해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순 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 과,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후속조치로 1 순위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34.9%), 2 순위 ‘영유아 대상 심리치료 제공’(33.3%), 3 순위 ‘부모면담 및 상담’(23.8%) 순으로 높게

표 9. 가해 보육교사 대상 후속조치 요구도 (다중응답) ($N=514$)

가해 보육교사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교사자격 정지	163(31.7)	172(33.5)	135(26.3)	968	1
교사자격 취소	168(32.7)	91(17.7)	50(9.7)	736	2
급여 감봉	17(3.3)	39(7.6)	114(22.2)	243	
전문상담 후 복귀	84(16.3)	105(20.4)	86(16.7)	548	3
전문상담 받으며 근무	68(13.2)	56(10.9)	42(8.2)	358	
해당기관 지원 감축	9(1.8)	14(2.7)	44(8.6)	93	
가해교사 명단 공개	2(0.4)	36(7.0)	42(8.2)	120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10. 피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후속조치 요구도 (다중응답) (N=514)

피해 영유아 및 부모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	225(43.8)	115(22.4)	89(17.3)	994	1
영유아 대상 심리치료 제공	122(23.7)	244(47.5)	93(18.1)	947	2
부모면담 및 상담	99(19.3)	73(14.2)	235(45.7)	678	3
해당 학급이나 어린이집 변경	24(4.7)	18(3.5)	23(4.5)	131	
법률 관련 부모상담	19(3.7)	8(1.6)	25(4.9)	98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요구도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험 유무, 참석하지 않은 이유, 참석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에게 도움이 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석 경험

최근 5년 이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험 유무 및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전체 보육교사 중 450명(87.5%)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총 344명(66.9%)은 1~3회 이하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보육교사의 경우 대다수가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90명, 59.2%)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나치게 바빠서’(45명, 29.6%)를 높게 응답하였다.

표 11.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석 경험 및 불참 이유 (N= 514)

참석 유무	N	%	불참 이유	N	%
없음	64	12.5	기회가 없어서	90	59.2
있음	450	87.5	지나치게 바빠서	45	29.6
1~3회 이하	344	66.9	관심 없어서	5	3.3
4~6회 이하	89	33.9	기타	12	7.9
7~9회 이하	9	1.8			
10회 이상	8	1.6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가 참석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보육교사가 가장 많이 참석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프로그램(288명, 63.4%), 어린이집 자체 교육(194명, 42.7%), 아동학대 관련 기관 교육(162명, 35.7%) 순으로 나타났다. 참석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 중 240명(‘52.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보육교사 중 465명(90.5%)가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보육교사가 필요하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도(1순위, 2순위, 3순위)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3, 표 14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형태의 경우, 1순위 ‘소집단 강의 및 강연’(28.9%), 2순위 ‘대집단 강의 및 강연’(25.1%), 3순위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경우,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학대 발견 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381명, 7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에 대해서’(330명, 64.2%), ‘학대 받는 영유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262명, 51.0%), ‘학대 받는 영유아 부모와의 면담방법이나 부모교육에 대해서’(253명, 49.2%), ‘학대 받는 영유아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208명, 40.5%) 순이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

표 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N= 514$)

프로그램 유형	N	%	프로그램 효과성	N	%
어린이집 자체 교육	194	42.7	전혀 그렇지 않다.	6	1.3
승급 및 보수교육	131	28.9	그렇지 않다.	7	1.5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288	63.4	보통이다.	128	28.2
아동학대 관련 기관 교육	162	35.7	그렇다.	240	52.9
유로 교육기관 프로그램	18	4.0			
온라인 교육	194	42.7	매우 그렇다.	73	16.1
기타	5	1.1			

표 13.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요구도 (다중응답) (N=514)

프로그램 형태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대집단 강의 및 강연	120(23.3)	135(26.3)	141(27.4)	771	2
소집단 강의 및 강연	181(35.2)	135(26.3)	77(15.0)	890	1
1:1 개별교육	31(6.0)	21(4.1)	45(8.8)	180	
집단 토론	29(5.6)	51(9.9)	81(15.8)	270	
온라인 교육	37(7.2)	49(9.5)	59(11.5)	268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를 통한 교육	95(18.5)	100(19.5)	59(11.5)	544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책자 제공	19(3.7)	23(4.5)	51(9.9)	154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14.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도 (중복응답) (N=514)

프로그램 내용	N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에 대해서	330	64.2
학대 받는 영유아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208	40.5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발견 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381	74.1
학대 받는 영유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262	51.0
학대 받는 영유아 부모와의 면담방법이나 부모교육에 대해서	253	49.2

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전문 상담 기관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도, 전문 상담 기관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 학대 예방과 개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전문 상담요원의 역할 및 자격기준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상담 기관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보

육교사가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37.5%), 2순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23.6%), 3순위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1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기관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영유아 및 부모가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1순위, 2순위,

표 15. 가해 보육교사 대상 상담 기관에 대한 인식 (다중응답) (N=514)

상담 기관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246(47.9)	136(26.5)	107(20.8)	1170	1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89(17.3)	176(34.2)	117(22.8)	736	2
사설 상담기관	43(8.4)	80(15.6)	120(23.3)	409	
해당 어린이집(방문지원)	75(14.6)	37(7.2)	66(12.8)	365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53(10.3)	77(15.0)	77(15.0)	390	3
온라인 상담	2(0.4)	8(1.6)	27(5.3)	49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16. 피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상담 기관에 대한 인식 (다중응답) (N=514)

상담 기관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227(44.2)	135(26.3)	123(23.9)	1074	1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102(19.8)	196(38.1)	85(16.5)	783	2
사설 상담기관	41(8.0)	73(14.2)	141(27.4)	410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75(14.6)	74(14.4)	89(17.3)	462	3
해당 어린이집(방문지원)	56(10.9)	33(6.4)	55(10.7)	289	
온라인 상담	6(1.2)	3(0.6)	20(3.9)	44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35.1%), 2순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25.6%), 3순위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1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사용 의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가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전체 보육교사 중 457명(88.9%)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효율성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육교사 본인의 의사결정,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표 17.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효율성에 대한 인식 (*N*=514)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사결정에 도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도움		
정도	N	%	정도	N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0.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9	1.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6	5.1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4	4.7
보통이다	127	24.7	보통이다	124	24.1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192	37.4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184	35.8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64	31.9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72	33.5

표 18.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도 (다중응답) (*N*=514)

내용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258(50.2)	162(31.5)	106(20.6)	1204	1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57(11.1)	131(25.5)	110(21.4)	543	3
사설 상담기관	26(5.1)	68(13.2)	106(20.6)	320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30(5.8)	42(8.2)	87(16.9)	261	
해당 어린이집(방문지원)	127(24.7)	85(16.5)	61(11.9)	612	2
온라인 상담	11(2.1)	26(5.1)	44(8.6)	129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17).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보육교사는 356명(69.3%),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보육교사는 356명(69.3%)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은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다(표 18).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39.2%), 2순위 ‘해당 어린이집(방문지원)’

(19.9%), 3순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 발달상담전문요원)¹⁾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보육교사 총 514

1)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내원 연령인 0-5세 영유아의 심층적 심리평가 및 놀이심리치료,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과 받은 것으로 검증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을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가칭)으로 정의하고자 함

명 중 490명(95.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역할에 대한 인식.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1순위, 2순위, 3순위)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9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35.2%), 2순위 '영유아 놀이심리치료,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28.2%), 3순위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2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요구도(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여부)를 아동학대 관련 상담, 아동학대 관련 심리평가 및 진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각 영역별로 살펴보았다(표 20).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경우, 학력은 대졸(247명, 51%), 심리학 전공(370명, 74.7%), 경력 3-5년(247명, 49.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심리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경우, 학력은 대졸(238명, 49.5%), 심리학 전공(373명, 78.2%), 경력 3-5년(207명, 43.4%)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경우, 학력은 대졸(236명, 51.8%), 아동학 전공(226명, 49.6%), 경력 3-5년(192명, 42.1%)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경우, 학력은 대학원졸(202명, 42.6%), 심리학 전공(290명, 61.2%), 경력 3-5년(177명, 37.3%)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 한 조치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 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1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37.5%), 2순위 '보육

표 19.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역할에 대한 인식 (다중응답) (N=514)

주요 역할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205(39.9)	138(26.8)	124(24.1)	1630	1
영유아 놀이심리치료,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	142(27.6)	181(35.2)	91(17.7)	1305	2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103(20.0)	89(17.3)	139(27.0)	935	3
아동학대 전수조사 및 보고서 작성	9(2.8)	17(3.3)	15(2.9)	103	
전문기관과의 연계	21(4.1)	45(8.8)	87(16.9)	303	
어린이집 방문지원, 온라인 상담	34(6.6)	44(8.6)	58(11.3)	350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20.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요구도 (N=514)

내용	아동학대 관련 상담		아동학대 관련 심리평가 및 진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N	%	N	%	N	%	N	%	
학력	고졸	22	4.4	18	3.8	37	8.1	26	5.5
	전문대졸	54	10.9	43	9.0	53	11.6	49	10.3
	대졸	247	51.0	238	49.5	236	51.8	197	41.6
	대학원졸	114	23.6	127	26.4	130	28.5	202	42.6
(중복응답)	심리학	370	74.7	373	78.2	193	42.3	290	61.2
	아동학	235	47.5	209	43.8	226	49.6	288	60.8
	전공 사회복지	74	14.9	54	11.3	179	39.3	105	22.2
	법률	23	4.6	31	6.5	96	21.1	42	8.9
	정신의학	129	15.4	169	35.4	93	20.1	134	28.3
	공무원	5	1.0	15	3.1	89	19.5	18	3.8
경력	3년 이하	57	11.5	55	11.5	88	19.3	65	13.7
	3~5년	247	49.9	207	43.4	192	42.1	177	37.3
	5~7년	120	24.2	143	30.0	122	26.8	157	33.1
	7년 이상	71	14.3	72	15.1	54	11.8	75	15.8
자격증	예	482	97.4	461	96.6	402	88.2	424	89.5
여부	아니오	13	2.6	16	3.4	54	11.8	50	10.5

표 21.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도 (다중응답) (N=514)

내용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	238(46.3)	100(19.5)	107(20.8)	1735	1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36(7.0)	111(21.6)	63(12.3)	501	
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	24(4.7)	27(5.3)	48(9.)	246	
신고의무제 강화	21(4.1)	42(8.2)	69(13.4)	279	
학대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23(4.5)	33(6.4)	36(7.0)	240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3(0.6)	11(2.1)	13(2.5)	53	
학대 가해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4(0.8)	11(2.1)	22(4.3)	68	
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예방적 평가 및 상담	37(7.2)	108(21.0)	77(15.0)	515	3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128(24.9)	71(13.8)	79(15.4)	989	2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21.5%), 3순위 '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예방적 평가 및 상담'(1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담 요구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보육행동 중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는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한 '도구(장난감, 식판, 막대기 등)를 이용해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등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행동을 대체적으로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등 성적 행동을 심각한 학대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은 행동' 등 정서적 학대 행동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가 보육행동 중 신체체벌이나 성적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며 영유아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

히는 행동을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식한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중복학대 비율이 가장 높으며(34.3%)(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중복학대를 당한 아동의 정신건강 예후가 더 좋지 않았다(이경숙, 박진아, 오은정, 2008)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안에 정서적 학대나 중복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중 92명(17.9%)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목격은 48명(9.2%),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목격은 14명(2.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도 보고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비율인 3.4%(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를 크게 웃도는 결과로 실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학대 발생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렇듯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에 신고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목격 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는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장 학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 후 무조치 이유로는 동료교사 학대는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는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하더라도 일단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이유는 간접하기 어렵거나 신고 후 부과된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보육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장 1명이 많게는 36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프레시안 뉴스, 2015.3.19.)와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신으로 불리며 보육교사에게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장 상황(프레시안 뉴스, 2015.2.16.)을 고려한다면, 국가차원에서 공적기관을 통해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발에 대한 신변보장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특히 아동학대 목격 후 대처방안 중 ‘온라인, 언론기관 등에 공개적으로 알렸다.’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응답은 전혀 없었는데, 이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목격해도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공적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 중 450명 (87.5%)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법적으로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 25조)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시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의 현재 정신 건강 문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2013)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총 203개 직업 중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26위에 이르며, 평균 10시간 가까이 OECD 평균을 초과하며 보육교사 1인당 평균 6.3명의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프레시안 뉴스, 2015.3.11.) 외에 업무일지 작성, 학부모와 잣은 접촉, 동료교사와 협력관계 등 평균 150가지의 직무(프레시안 뉴스, 2015.3.19.)를 과다하게 담당하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과 심각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권혜진, 2008; 이무영, 박상희, 문수경, 2008). 이는 보육교사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직무수행 및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결국 보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신혜영, 이은해, 2005; 정명선, 2014; 한세영, 김영희, 김연화, 2007;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아동학대에 연루된 영유아, 보육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국내 실정(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을 고려한다면,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과다한 업무 분담을 위한 효율적 행정 및 제도적 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및 균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중 182명(35.4%)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육교사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최근 정서 및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영유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및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사 행위자 특성 중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44.9%)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결과(보건복지

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보육교사가 보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영유아가 있을 때,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인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영유아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는 가해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자격 정지’, 피해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들도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더 이상 보육을 담당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피해 영유아를 위해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정신병리 관련 심리 평가를 시급하게 실시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및 아동학대 사건 발생 직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응급영유아위기심리지원 제도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영유아 행동특성 중 ‘특성 없음’(62.6%)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점(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을 고려한다면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직후 언어적 발달에 제한이 있는 0-5세 어린이집 내원 영유아의 발달 및 발달정신병리에 대해 전문적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방문하여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후, 영유아 및 부모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 대한 최종조치로 ‘지속관찰’(52.1%)이 가장 많았던 것(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을 고려한다면 가해 보육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평가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본 연구진은 현재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SBS 뉴스, 2015. 1.13)에 응급영유아위기심리지원팀 소속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자격으로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심리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여 피해 영유아를 위한 놀이심리치료,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보육교사가 요구한 응급 위기심리지원의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다섯째, 보육교사 중 450명(87.5%)이 최근 5년간 1-3회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288명, 63.4%)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추후 ‘소집단 강의 및 강연’ 형태로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발견 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즉 보육행동 중 아동학대 행동의 정의 및 범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학대 목격 시 또는 본인이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보육교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 라인 및 현장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가해 보육교사, 피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상담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중 457명(88.9%)가 사용할 의사가 있고,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 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효과적일 것이며, 설치 장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에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육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요구도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37.5%)를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을 고려한다면, 추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활발한 정책적 논의와 토론이 요구된다.

일곱째, 보육교사 중 490명(95.3%)이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35.2%) 역할을 담당할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을 위한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을 내원하여 가해 보육교사,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평가를 실시하여 학대 사례 판정을 하고, 신속하게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및 임상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인력을 양성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양적

연구결과이므로 보육교사가 경험한 영유아 학대경험이나 학대 관련 인식에 대해 편향적으로 확대보고하거나 축소보고 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질적 연구를 통해 실제 보육교사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추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를 획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므로, 추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보육현장에서 실시한 후 사전·사후 효과검증 하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후속연구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육교사, 영유아 및 부모 각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셋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보육현장을 고려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및 전문상담요원이 필요하다는 보육교사의 요구도가 있었던 본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추후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을 양성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있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를 살펴본 경

험적 연구가 부재한 실정에서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이상규, 이민규 (2007). 한국판 아동용 외상 후 반응 척도 (K-CRTE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667-675.
- 권혜진 (2008).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 정서적 부조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인간발달연구*, 15(4), 93-113.
- 김세진, 김교현 (2005). 아동의 외상경험에 대한 자기노출이 분노 반응에 미치는 효과: 적대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47-65.
- 내외뉴스 (2015.3.17.).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안전사고 제로 인증사업 전국실시.
- 노컷뉴스 (2015.3.2.). 경찰 법석면 아동학대 전수조사, 결과는 ‘초라’
- 동아일보 (2013.6.12). 보채는 아이 18명 혼자 감당. “통제 안 돼 나도 모르게 학대”
- 동아일보 (2015.2.6.). 어린이집 바늘 학대 피해 아동 6명으로 늘어 “착한 바늘로 불려왔다.”
- 베이비뉴스 (2013.11.25). 잔혹했던 1월, 아동학대 특례법 추진해야.
- 보건복지부 (2013).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2013.5.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 (2013.8.29).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새누리당안심보육정책토론회 (2015.2.11.). 안심 보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 소비자경제신문 (2015.3.18.).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근본 해결 위해 나섰다.
- 신혜영, 이은혜 (2005).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05-121.
- 이경숙, 박진아, 오은정 (2008). 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 성, 연령 및 학대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3), 1-19.
- 이무영, 박상희, 문수경 (2008). 보육교사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2), 277-294.
- 인천시청 (2015.3.11.). 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적극 추진.
- 정명선 (2014).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47-166.
- 정명선 (2014).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47-166.
- 조선일보 (2015.1.30.). 핵편치 보육교사 이어 수원 0 어립이집 핵 이빨 원장, “2세 남아

- 물어뜯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4.11). 2013년 1/4
분기 아동학대현황.
프레시안 뉴스 (2015.2.16.). 어린이집 원장님은
신이에요. 신.
프레시안 뉴스 (2015.3.11.). 돌 안된 아이 셋이
울면, 교사 1명이 어떻게 하죠?
프레시안 뉴스 (2015.3.19.). 자격 없는 대표가
36개 운영. 어린이집이 치킨집?
프레시안 뉴스 (2015.3.9.). 우리가 왜 괴물이
되었을까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감정노동의 직업
별 실태. KRIVET Issue Brief, 26.
한세영, 김영희, 김연화 (2007). 교사의 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0(2), 53-67.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17(1), 313-335.
Korfmacher, J. (2000). The Kempe Family Stress
Inventory: a review. *Child Abuse Neglect*, 24(1),
129-40.
MBC 시사매거진 2580. (2013.9.8.). 어린이집에
서 어떤 일이.
Nanni, V., Uher, R., & Danese, A. (2012).
Childhood maltreatment predicts unfavorable
course of illness and treatment outcome in
depression: a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9, 141-151.
Rich-Edwards, J. W., Spiegelman, D., Lividoti,
Hibert, E. N., Jun, H. J., Todd, T. J., &
Kawachi, I. (2010). Abus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s a predictor of type 2 diabetes
in adult wome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9, 529-536.
Saperia, J., Lakhanpaul, M., Kemp, A., & Glaser,
D. (2009). Guideline Development Group and
Technical Team. When to suspect child
maltreatment: summary of NICE guidance.
BMJ. 22, 339.
SBS 뉴스 (2015.1.13.). 인천 어린이집, 원생 머
리 강하게 내리쳐.. ‘CCTV 영상’ 화들짝.
SBS 뉴스 (2015.3.14.). 인천 어린이집 학대 후
두달, 아이들은 지금.
SBS 뉴스 (2015.3.25.). 울산 어린이집 화재. 보
육교사 신속한 조치로 ‘원생 모두 구조’.
Surtees, P. G., Wainwright, N. W., Pooley K. A.,
Luben, R. N., Khaw, K. T., Easton, D. F.,
& Dunning, A. M. (2011). Life stress,
emotional health, and mean telomere length
in the 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EPIC)-Norfolk population stud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66(11), 1152-116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08).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2).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논문 투고일 : 2015. 03. 31
1차 심사일 : 2015. 04. 20
제재 확정일 : 2015. 05. 28

Child Abuse Experience, perception of the Cause of the Child Abuse and Need for counseling among Day Care Center Teachers

Kyung-Sook Lee

Hanshin University

Jin-Ah Park

Sewon Infant & Child Development Center

Myung-Hee Choi

Singu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child abuse experience, response to child abuse, perception of the cause of child abuse, and need for counseling to prevent and eliminate child abuse among 514 day care center teachers across the country. First, 17.9% (92) of the teachers had experience of witnessing child abuse at day care centers. After such witness, the teachers mostly “paid attention to abused children and provided them with warm treatment” when they were abused by other teachers and “took no actions” when they were abused by directors of the day care centers. The biggest reason of not taking any actions was: they “had no authority to intervene in child care of other teachers” in case of child abuse by other teachers and “were afraid of responsibilities or roles that could be placed on them after reporting” in case of child abuse by day care center directors. Second, the biggest reason of child abuse by teachers was job stress followed by excessive work and mental health of teachers. Third, necessary actions when child abuse cases were found and confirmed were suspension of involved teachers and psychological evaluation for involved children and parents. Fourth, 88.9% (457)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would use an organization specialized in child abuse if such organization was built and that the organization would help them to decide on whether to report child abuse and prevention of and intervention in child abuse. They also said that such organization should be installed in the Counseling Center in the Comprehensive Child Care Support Center. Fifth, 95.3% (490) of the teachers answered professional counselors specialized in development and counseling of infants and toddlers were needed to address child abuse at day care centers. They demanded that such counselors should be able to administer psychological evaluation for young children and assess child abuse cases. Qualification of the counselors was at least college graduates who majored in psychology and child care, three to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and appropriate certificates or licenses. Finally, the teachers said that training and professional counseling about child abuse were required to prevent and eliminate child abuse at day care centers. Implica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provided and suggested based on these findings.

Key words : Child Abuse, preschooler, day care center teacher, mental health, counseling